

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78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11. 9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상위법 인용조문과 위원회 명칭 등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인용조문 등 변경(안 제1조, 제4조, 제12조)

나. 위원회 명칭 변경(안 제7조)

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 7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 평가: 개선사항 없음(가족복지과-36870호, 2023. 9. 14.)

라. 입법예고: 2023. 9. 11. ~ 10. 2.(21일간) / 의견없음

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3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7”로 한다.

제4조제5호 중 “법 제18조의2”를 “법 제18조의6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전단 중 “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를 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중 “기금업무 담당 과장”을 “자활업무 담당 부서장”으로, “기금업무”을 “자활업무”로 한다.

같은 조 제2항을 “제1항에 따른 사무를 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을 「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	정	행	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을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7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		
<p>제4조(기금용도)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이하 “수급자”라 한다) 채용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</p> <p>6. ~ 13. (생략)</p>	<p>제4조(기금용도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법 제18조의6----- ----- -----</p> <p>6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			
<p>제7조(자금대여) ①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,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4조 울산광역시 중구 <u>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</u>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. 이 경우</p>	<p>제7조(자금대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.</p>			

타당성 검토를 중앙·광역자활 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② ~ ⑥ (생략)

제12조(기금관리자)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: 기금업무 담당 과장
2. 기금출납원: 기금업무 담당 계장

② 「지방재정법」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.

제16조(관계규정 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기금관리자) ① -----

-----.

1. -----: 자활업무 담당 부서장
2. -----: 자활업무 -----

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제16조(관계규정 준용) -----

----- 「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---.

근 거 법 규

□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제18조의7(자활기금의 적립)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.

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·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2호
 -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2023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그 비용이 공개된 경우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

3. 작성자

- 소 속: 노인장애인과
- 직 급: 지방사회복지주사
- 성 명: 한지은
- 연락처: (052)290-3581